

#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태용 의원 대표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524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1일

발 의 자: 장태용, 김규남, 김동욱,  
김지향, 박상혁, 서상열,  
신복자, 이상욱, 이숙자,  
이희원, 임춘대, 정지웅,  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16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를 '영상제'로 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칸 영화제, 베를린 국제영화제, 베니스 영화제 등의 해외 유수의 영화제는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시상식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, 아카데미 시상식 등과 같이 영화상영 행사 없이 시상식으로만 이루어진 영상산업 관련 행사도 존재함.
- 따라서 기존의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,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영상제, 시상식의 부대행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1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, 영상진흥기본법 ,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영상제의 지원)”을 “(영상제 등에 대한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영상제”를 “영상제,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영상제”를 “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영상제,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”로 하고, “영상 관련 조직위원회”를 “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제6조(영상제의 지원)</u> ① 시장은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<u>영상제</u>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<u>영상제</u>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 따라 <u>영상 관련 조직위원회</u>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</p> | <p><u>제6조(영상제 등에 대한 지원)</u> ① -<br/>-----<br/>-----<br/>--- <u>영상제,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</u>-----<br/>-----.</p> <p>② -----<u>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영상제,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</u>-----<u>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</u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|

#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(영상제 등에 대한 지원) 제1항은 '영상제'가 '영상제,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'로 변경되어 비용이 발생하나, 2024년부터 기 편성되어 추진중이며, 같은 조례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# 〈2024년 서울시 영화 시상식 및 영상제 지원 사업 예산〉

| 사업명              |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산액(천원)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서울시 영화 시상식 지원 사업 | (100-307-04)민간행사사업보조<br>서울시 영화 시상식 지원 | 800,000   |
|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     | (100-307-04)민간행사사업보조<br>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  | 1,500,000 |

### (참고) 민간행사사업보조(307-04)

-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
※ 단체운영비(사무실임대료, 상근직원인건비 등) 지원 불가, 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 금지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이정수

추 계 분 석 관     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